

## 2023 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(긴급) 지원 공고

- ✓ 현대오일뱅크와 (재)한국에너지재단은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발생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난방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✓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한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✓ (재)한국에너지재단([www.koref.or.kr](http://www.koref.or.kr))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# 1 지원 개요

#### □ 사업목적

- 최근 난방비 부담이 증가한 취약계층 가구,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난방유를 지원해 에너지복지 향상 도모
- ESG 경영을 고려한 사회공헌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

#### □ 대상 기준

대상/지역	사회복지시설(시설) / 전국(충남 제외)*	취약계층(가구)* / 전국(충남 제외)*
지원금액	개소당 200만 원(상품권)	가구당 30만 원(상품권)
신청주체	사회복지 시설	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(규모 등 제한 없음)
지원개소	2,000개소	10,650가구
대상 기준	① 난방 연료 : 등유 사용 ② 이용자 수 - 생활시설(입소정원 50인 이하) - 이용시설(상근종사자 10인 이하) ③ 시설 조건 - 3~6가구 대상자 추천 - 직접 복지서비스 수행 (아동, 노인, 여성, 장애인, 청소년 등) - 미신고 시설, 간접 수행 제외	① 난방 연료 : 등유 사용 ② 가구 조건 - 차상위계층(증명서) - 중위소득 50~60%(건강보험료 납입증명) ③ 중복수급 불가 - 에너지 바우처, 등유바우처, 연탄쿠폰, 23년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제외
	※ 분야별 위 기준 모두 충족 시 추천 가능(분야별 ②은 한 개조건 해당 가능)	

\* (가구) 개인이 직접 신청 불가하며 추천기관 경유 접수, 개별 가구 대상자에게 상품권 배포 금지

\* 충청남도는 현대오일뱅크 별도 예산으로 자체 사업 시행

##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60% - 노인장기요양보험 미포함

가구원 수	중위소득 60%(원)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		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합(직장+지역)
1인*	1,246,735	43,302	19,049	-
2인	2,073,693	72,658	65,318	73,199
3인	2,660,890	93,530	91,571	94,712
4인	3,240,578	113,355	118,729	115,641
5인	3,798,413	134,608	148,264	136,865
6인	4,336,789	154,888	170,489	157,869

\* (1인 가구) 중위소득 120%의 반액으로 추산 기재

### 2 접수 관련

#### □ 신청서 접수

- 접수 기간 : 2023. 2. 21.(화) ~ 3. 8.(수)
- 접수 방법 : 메일 접수(신청서, 증빙 등 첨부파일 필수)
  - \* E-mail : [sg1@koref.or.kr](mailto:sg1@koref.or.kr) / 담당자 : 02-6913-2132, 2145, 2147
- 접수 구분
  - (시설) 지원사업 신청 복지시설 추천 가구(3~6개) 포함 접수
  - (가구) 전국 지자체\*, 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가구(3~6개)
  - \* (지자체) 위로는 광역, 아래로는 기초지자체까지 개별로 신청 가능  
ex)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당 6가구 가능, 지자체 발굴 후 신청시설 배분 가능
- 제출 서류

구분	제출서류
공통	- 메일 접수 ( <a href="mailto:sg1@koref.or.kr">sg1@koref.or.kr</a> )
사회복지 시설	- 지원 신청서(시설) 1부
	- 시설신고증, 시설 고용(사업자)등록증 각 1부
취약계층 가구	- 지원 신청서(가구) 1부
	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동의서 1부
	-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(차상위계층)
	-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(중위소득 50~60%)
* 조건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	

## □ 진행 일정

구 분	일 정	주요 내용
대상자 추천 및 접수	2023. 2. 21.~3. 8.	- 지자체, 복지시설, 유관기관에서 발굴 및 추천 - 신청 접수(전자우편 접수)
대상 심사 및 선정	3. 9.~3. 23.	- 대상자 선정 적격 심사
대상자 발표	3. 24.	- 시설 2,000개소, 가구 10,500가구 선정 - 홈페이지 게재, 담당자 문자 통지
난방비 지원 상품권 지급 및 수령 확인	3. 27.~4. 30.	- 주유 상품권 유가증권 발송 - 수령 확인 및 인수확인증 회신 - 부정 수급 방지 및 준수사항 안내 - 증빙 자료 및 결과보고서 작성법 공지
결과 보고 취합	~2023. 6. 30.	-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사용 점검 -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점검

\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## 4 유의 사항

- 가구는 추천기관\* 경유 접수, 추천기관당 3~6가구 신청  
\* (추천기관) 선정 후 유류 지급·결과보고서 작성 등 수행(가구에 상품권 지급 X)
- 사랑의 난방유 지원은 공고문에 명시된 범위에서 지원함
- 현대오일뱅크 주유소\*에서 등유 구매 어려울 시 지원 불가  
\* (지원 유무) 주유소 또는 자체 배달로 주유 가능해야 지원
- 유사 사업\*의 수혜 대상이거나 예정일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 
\* (유사 사업) 에너지 바우처, 등유 바우처, 석탄 쿠폰, 민간 등유 지원 등

## 5 문의

- (재)한국에너지재단 02-6913-2132, 2145, 2147

## 붙임1 주유소 검색 안내

<https://www.opinet.co.kr> 접속 후  
“산 주유소 찾기” → “지역별”을 클릭

지역 설정 후 상표는 “현대오일뱅크”만 체크  
품목은 “실내등유”로 하여 주유소 확인

검색되는 주유소 위치 확인 후 전화하여  
배달 가능, 등유 취급 여부를 확인

해당 지역에 없을 시 근처로 범위를 바꾸어  
재검색 후 여부 확인  
(근처에 없거나 배달 불가,  
등유 미취급 시 지원 불가)

## 붙임2 신청서 작성 관련

### □ 신청서 작성 관련

#### ○ 복지시설

지원 신청서	주소	- 상품권 수령 가능 주소
	담당자명 휴대전화	- 작성 필수(선정발표 시 문자 발송 등) - 사업 진행 중, 담당자 변경 시 고지
	E-mail	- 한메일(hanmail.net, daum.net) 제외한 메일로 기재 및 발송 요청 <b>* 수신 오류 발생으로 인한 접수 누락 시 지원 불가</b>
	지원 경험	- 2023년 지원사업(사랑의 열매, 에너지 바우처 등)
	사용처	- 난방유 구매 예정 “ <b>현대오일뱅크 주유소명</b> ” 기재 * 배달 가능, 등유 취급 여부 등을 지원 전 사전확인 요망 * 주유소 검색은 <b>붙임1 참고</b> ( <a href="https://www.opinet.co.kr">https://www.opinet.co.kr</a> )

#### ○ 가구

지원 신청서 (기본사항)	주소	- 지원받을 가구 주소
	가족사항	- 실제 거주하는 가구원 수 기재
	지원 여부	- 2023년 지원사업(사랑의 열매, 에너지 바우처 등)
지원 신청서 (추천기관)	주소	- 상품권 수령 가능 주소
	담당자명 휴대전화	- 작성 필수(선정발표 시 문자 발송 등) - 사업 진행 중, 담당자 변경 시 고지
	E-mail	- 한메일(hanmail.net, daum.net) 제외한 메일로 기재 및 발송 요청 <b>* 수신 오류 발생으로 인한 접수 누락 시 지원 불가</b>
	사용처	- 난방유 구매 예정 “ <b>현대오일뱅크 주유소명</b> ” 기재 * 배달 가능, 등유 취급 여부 등을 지원 전 사전확인 요망 * 주유소 검색은 <b>붙임1 참고</b> ( <a href="https://www.opinet.co.kr">https://www.opinet.co.kr</a> )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작성 요령	- 지원받을 가구 대상자 작성

## 붙임3 사회복지시설 범위 및 개념

###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(근거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)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별 법령\*에 의한 “보호·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”과 “사회복지상담·직업지원·무료숙박·지역사회복지·의료복지·재가 복지·사회복지관 운영·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”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“자원봉사활동 및 복지 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”을 말함

#### \* 개별 법령

- ① 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」 ② 「아동복지법」 ③ 「노인복지법」 ④ 「장애인복지법」
  - ⑤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⑥ 「영유아보육법」 ⑦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  - ⑧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  - ⑨ 「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⑩ 「입양특례법」
  - ⑪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
  - ⑫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 ⑬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
  - ⑭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⑮ 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」
  - ⑯ 「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⑰ 「의료급여법」 ⑱ 「기초연금법」 ⑲ 「긴급복지지원법」
  - ⑳ 「다문화 가족 지원법」 ㉑ 「장애인연금법」 ㉒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
  - ㉓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㉔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
  - ㉕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㉖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  - ㉗ 「청소년 복지지원법」 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\*
- \* 「건강가정기본법」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,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

§ 법제처 해석(15-0247, 15.6.23)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

소관부처	시설종류	세부종류		관련법
		생활시설	이용시설	
보건복지부	노인복지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노인주거복지시설</li> <li>노인요양복지시설</li> <li>노인대학노인종합센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가노인복지시설</li> <li>노인여가복지시설</li> <li>노인보호전문기관</li> <li>노인일자리지원기관</li> </ul>	「노인복지법」
	복합노인복지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노년층에 지역에 대해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가능</li> </ul>		「노년층주요의 보건의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」
	아동복지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아동양육시설</li> <li>아동일시보호시설</li> <li>아동보호전문기관</li> <li>자립지원시설</li> <li>공공생활가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아동상담소</li> <li>아동상담소</li> <li>지역아동센터</li> <li>아동보호전문기관</li> <li>가정위탁지원센터</li> </ul>	「아동복지법」
	장애인복지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유형별 거주시설</li> <li>장애유형별 아동·청소년</li> <li>장애유형별 노인</li> <li>장애유형별 장애인</li> <li>장애유형별 장애인</li> <li>장애유형별 장애인</li> <li>장애유형별 장애인</li> <li>장애유형별 장애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</li> <li>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</li> <li>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</li> <li>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</li> <li>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</li> <li>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</li> <li>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</li> <li>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</li> </ul>	「장애인복지법」
	어린이집		어린이집	「영유아보육법」
	정신보건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신요양시설</li> <li>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</li> </ul>	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	노숙인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노숙인자활시설</li> <li>노숙인재활시설</li> <li>노숙인요양시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노숙인종합지원센터</li> <li>노숙인일시보호시설</li> <li>노숙인급식시설</li> <li>노숙인치료시설</li> <li>폭방상담소</li> </ul>	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
	사회복지관 결핵·한센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결핵·한센시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복지관</li> </ul>	「사회복지사업법」
	지역자활센터		지역자활센터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	다함께돌봄센터		다함께돌봄센터	「아동복지법」
여성가족부	성매매피해지원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반지원시설</li> <li>청소년지원시설</li> <li>외국인지원시설</li> <li>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활지원센터</li> <li>성매매피해상담소</li> </ul>	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	성폭력피해보호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성폭력피해상담소</li> </ul>	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	가정폭력보호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정폭력상담소</li> <li>긴급전화센터</li> </ul>	「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	한부모가족복지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모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 공동, 자립)</li> <li>부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 공동, 자립)</li> <li>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 공동)</li> <li>일시지원복지시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</li> </ul>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	다문화가족지원센터		다문화가족지원센터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	건강가정지원센터		건강가정지원센터	「건강가정기본법」
	청소년복지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소년쉼터</li> <li>청소년치료지원관</li> <li>청소년치문재활센터</li> <li>청소년회복지원시설</li> </ul>		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
※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의집, 여성회관, 육아지원센터 등은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님

[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]

대상자별	형태	시설 종류	소관부서	관련법령	
노인	생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노인요양시설</li> <li>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</li> </ul> </li> <li>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양로시설, 노인 공동생활가정</li> <li>노인복지주택</li> </ul> </li> <li>대학피해노인전문센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요양보호운영과</li> <li>노인정책과</li> </ul>	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	
		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가노인복지시설(방문요양,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, 방문목욕, 재가노인지원, 방문간호)</li> </ul> </li> <li>여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노인복지관</li> <li>경로당, 노인교실</li> </ul> </li> <li>노인보호전문기관</li> <li>노인일자리지원기관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요양보호운영과</li> <li>노인지원과</li> <li>노인정책과</li> <li>노인지원과</li> </ul>
			생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</li> <li>아동일시보호시설</li> <li>아동보호전문기관</li> <li>자립지원시설</li> <li>공동생활가정(대학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)</li> </ul>
	이용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아동상담소, 아동전문시설, 가정위탁지원센터</li> <li>지역아동센터</li> <li>아동보호전문기관</li> </ul>
		이용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다함께돌봄센터</li> </ul>
	장애인	생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유형별 거주시설</li> <li>중증장애인 거주시설</li> <li>장애영유아 거주시설</li> <li>장애인단기 거주시설</li> <li>장애인공동생활가정</li> <li>피해장애인쉼터</li> </ul>		장애인권익지원과
이용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사회 재활시설</li> <li>장애인복지관</li> <li>장애인주간보호시설</li> <li>장애인체육시설, 장애인수련시설, 장애인생활아동지원센터</li> <li>수어통역센터, 점자도서관,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</li> </ul>	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의료재활시설</li> <li>직업재활 시설</li> <li>장애인보호작업장, 장애인근로사업장,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</li> <li>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정책과</li> <li>장애인리활기반과</li> </ul>	
영유아		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어린이집</li> <li>국공립, 법인, 직장, 가정, 부모협동, 민간</li> </ul>	보육기반과	
정신질환자		생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</li> </ul>	정신건강정책과	
		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</li> </ul>		
노숙인 등	생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노숙인자활시설</li> <li>노숙인종합지원센터</li> <li>노숙인급식시설</li> </ul>	자립지원과	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	
	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노숙인재활시설</li> <li>노숙인일시보호시설</li> <li>노숙인치료시설</li> <li>폭방상담소</li> </ul>			
지역주민	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복지관</li> </ul>	사회서비스지원과	「사회복지사업법」	
	기타시설	복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결핵·한센시설</li> </ul>	질병관리본부 (결핵·에이즈 관리과)	「사회복지사업법」
이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자활센터</li> </ul>	자립지원과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	